

2021년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2021년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7. 1.

울 산 광 역 시 장

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을 말함.

2 지정개요

- 지정기간 : 지정일부터 3년
※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함.
- 지원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인건비, 사업개발비 지원) 공모신청 자격부여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우선구매 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컨설팅 및 판로지원 등
- 지정요건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며 아래의 요건을 갖춘 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음.(단, 2020년까지 지역형-부처형 중복지정 받은 기업은 지정 종료일까지 인정)

① 조직형태 : 법인, 조합,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② 사회적목적 실현 : 5종(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은 인증업무지침을 준용함)

-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사업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해야함.(괜찮은 일자리는 최저 임금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함.

※ 최근 6개월내 고용조정이 없어야함.(모든 유형 동일적용사항)

③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으나,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다만,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경우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등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 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 세부내용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참고(11페이지)
 - ※ 공고문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202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 지침(고용노동부)」에 따름

3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1. 7. 1.(목) ~ 7. 16.(금) 18:00**
 ※ 신청 접수마감일 18:00까지만 신청가능함
- 접수처 : 소재지 관할 구·군청(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 모든 신청서류 스캔, pdf 파일전환 후 업로드
-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 사회적기업의 개요 및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등
 -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신청접수 방법
 - 설명회 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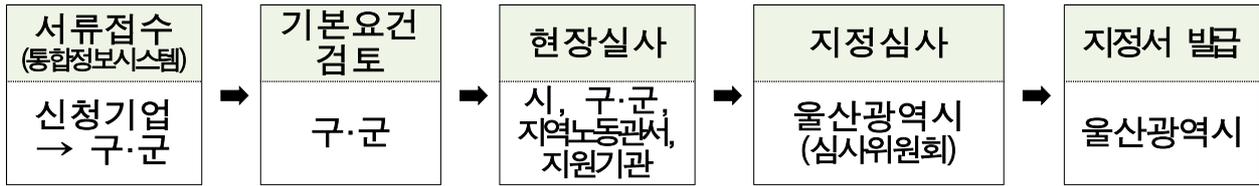
구분	일시	장소	문의
1차	2021. 7. 6.(화) 14:00~16:00 ※ 13:00부터 입장 가능	설명회 링크 https://us02web.zoom.us/j/87310405376?pwd=UUFRCkRKL3VKUGpQRFlhOamx6K3hadz09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052-267-6176
2차	2021. 7. 8.(목) 14:00~16:00 ※ 13:00부터 입장 가능	설명회 링크 https://us02web.zoom.us/j/86299657657?pwd=M0RWTENML1hVUw0eUjCN2Npdki4QT09	

- 접속방법
 - 컴퓨터 : <http://www.zoom.us> 접속 또는 url 링크 따라 그대로 입장
 - Smart Phone : zoom앱 설치
 - ※ 1차(7.6.(화)) ID : 873 1040 5376/암호 : 0000
 - 2차(7.8.(목)) ID : 862 9965 7657/암호 : 0000
- (컨설팅 및 상담)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052-267-6176)
 - 설명회 이후 제출 서류 및 작성 방법 등 예비 지정에 대한 문의

4

심사절차 및 방법

○ 심사절차



○ 심사방법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을 갖추고
- 사회적 목적이 조직의 주된 목적 여부, 독립된 조직 형태 여부,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 여부 등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기준」을 참고하여 전문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심사결과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공고

5

주요 심사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 신청기업이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조직형태 심사사항 >

-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함.
 - 그러므로 조직의 부서·사업단 등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없음.
- ◆ 모법인으로부터 분리·독립한 기업일 경우,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지정 받을 수 있음.
- ◆ 대표자의 겸직 등으로 독립성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

< 사회적 목적 실현 심사사항 >

-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함.
- ◆ 사업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
 -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관청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해야 함.(사회적 목적실현 기준은 인증업무지침을 준용함.)
 -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함.
 - ※ 최근 6개월내 고용조정이 없어야함.(모든 유형 동일적용사항)

※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그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장기 실업자 등을 말함.

-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 배분 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정관 명시 여부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부적정 여부 등

6 제출서류

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3.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법인 등에 한함) 등
 - *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되어 있어야 하며, 지점의 사업자등록증도 제출하여야 함.
4.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실적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의 2 ~ 제2호의 6】
 - *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별 사실확인서 및 구비서류
5. 유급근로자명부 【별지 제2호의 7】 (해당 기업만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보험),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준수여부 확인)
 - * 공고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분 제출(해당기업만)
6.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만 제출, 반드시 통합정보 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 * 재무제표(손익계산서)등은 외부 전문기관(회계사세무사 등)이 사실 확인한 최근(공고일 기준 전년도까지) 가결산 자료(해당기업만,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첨부)

7. 사회서비스 제공 내역서 및 확인서 【별지 제2호의 11】 (해당 기업만)
8. 정관·규약(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 등* 경우) (해당 기업만)
 - ※ 이익 재분배 내용(청산 또는 해산 시 포함) 포함
 - * 정관, 규약 등은 반드시 접수마감일 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정
 -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조합,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 일반협동조합, 「민법」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9.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별지 제2호의 8】
10.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6호】
11.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확인증
 - * 사회적기업 기본과정(7시간), 사회적기업 인사노무관리 기초(1시간), 사회적기업 회계실무(1시간)
 -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e-런닝' 메뉴에서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수강
 - * 지방자치단체, 권역별지원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 수료증 대체 가능(단, 교육시간 5시간 이상 과정만 인정)
12. 대표자 이력서(붙임서식 참고)
13.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7 기타사항

- 지정요건은 공고마감일 현재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서류는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일정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합니다.
-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신청자의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울산광역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 공고내용 및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의 제반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 사회적 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릅니다.

8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사회혁신담당관실 [(전화) 052-229-8492, (팩스) 052-229-8459]
- 지정상담 및 신청접수는 권역별 지원기관, 소재지 관할 구·군에 문의
- (상담 및 컨설팅) 권역별 지원기관

기 관 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052) 267-6176	052) 267-6177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145, 10층 ※ 고용노동부 지정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 (접수) 구·군 담당부서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주 소
울산광역시 중 구	일자리기업과	290-4782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
울산광역시 남 구	일자리정책과	226-3291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 233
울산광역시 동 구	일자리정책과	209-6975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
울산광역시 북 구	경제일자리담당관	241-727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울 주 군	일자리정책과	204-137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군청로 1

- (시스템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 이 트 명	연 락 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1661-4006

<참 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1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② 「상법」에 따른 회사
 -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⑦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1)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 ②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 박물관·미술관
 - 3)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제한 사항

- 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한 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
 - ※ 제한기간 횡수 기산방법 : 2017. 1. 1 신청분부터 적용, 지역형·부처형 합산
 - ※ 신청자격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제한기간 기산 시 횡수에 포함
- ②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 ▲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③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 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받을 수 없음.

② 사회적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
 -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해야 함.(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은 인증업무지침을 준용함)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함.

※ 최근 6개월내 고용조정이 없어야함.(모든 유형 동일적용사항)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 기준

◆ 사업계획서 판단 기준

-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일 것
 -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
 - 괜찮은 일자리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함.
 - 의무 고용비율(30%)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반드시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외 근로자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제공은 사업내용과 담당업무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판단함.
-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
 -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해당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 **지역에서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경우**
 - 지역사회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일 것
- ▶ **기타(창의·혁신)형** :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일 것
 - ※ 최근 6개월내 고용조정이 없어야함.(모든 유형 동일적용사항)

③ 영업활동을 수행 할 것

-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 ※ 영업활동 수행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정관 등 명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 정관 등은 접수 마감일 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 ※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외 이윤배분 규정이 있는 조직형태의 예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 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 :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참고 1 취업계층의 판단기준

제1호(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 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통보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 단,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확인에 의한 소득판단은 지역가입자 제외

*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입영수증)를 통하여 저소득자 여부를 확인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실제 동거 및 부양 여부를 확인함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직전년도 3/4분기'의 월평균 소득

[단위: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20년 3/4분기 가구 월평균소득	2,389,428	3,725,918	5,693,311	6,816,471	6,654,467
60%	1,433,656	2,235,550	3,415,986	4,089,882	3,992,680
월 보험료 납부액	52,701	82,178	125,571	150,344	146,770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입고지액에 따른 월평균소득 판단방법
- 월평균소득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 × 1/'20년도 직장가입자보험료율(3.676%)

제2호(고령자) 만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인단서(전문의) 등

제4호(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청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경력단절여성등: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81호, 2020.12.31.)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확인방법: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및 수수료증(이수증) 등

* 장려금 지급대상자가 불분명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협조요청 하여 대상자 확인

제6호(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 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제10호(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제12호(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조회

* 고용노동부 워크넷이나 민간 취업알선기관(직업소개소 포함)을 통해서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구직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 조회 결과 취득기록이 없는 경우에 해당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 등록증,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자. 난민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차. 보호종료 아동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 된 아동 중 5년이 지나지 않은 아동

☞ 확인방법: 보호종료확인서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서 발급(보건복지부에서 자립수당 지급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시 발급 중)

카.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 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 등급), 학교폭력 피해자, 학교밖청소년*, 중증질환자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18.7.17. 시행)에 따라 자퇴, 미진학, 재적 등 처분을 받은 청소년

☞ 확인방법: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류, 신용등급조회서류 등 객관적 확인서류 또는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확인서류로 인정 가능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관련 경과규정: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금융채무 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여부를 판단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는 2011년 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해당되며 2012년 부터는 취약계층으로 신규승인 불가

*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취약계층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사회적기업에서 퇴직시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

* 채용당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신분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신분을 인정. 단, 인증 또는 취업당시에는 '저소득'자가 아니었으나, 해당 사회적기업에 취업하거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이후 '저소득'자가 된 경우는 취약계층으로 인정하지 않음

예시) 일반근로자로 '18.5.1. 고용된 자가 '18.7.15. 고령자가 된 경우 '18.7.15. 부터 취약계층으로 인정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	-----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② 대 표 자		
③ 연 락 처 (FAX.)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input type="checkbox"/> 사단법인 <input type="checkbox"/> 재단법인 <input type="checkbox"/> 민법상 조합 <input type="checkbox"/> 주식회사 <input type="checkbox"/> 유한회사 <input type="checkbox"/> 합자조합 <input type="checkbox"/> 공익법인 <input type="checkbox"/> 비영리민간단체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법인 <input type="checkbox"/> 소비자생활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사회적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협동조합연합회 <input type="checkbox"/>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input type="checkbox"/> 영농·영어조합법인 <input type="checkbox"/> 농업·어업회사법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input type="checkbox"/> 법인으로 보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기타(문화단체 등)		
⑦ 지 정 유 형	<input type="checkbox"/> 사회서비스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일자리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공헌형(㉠[], ㉡[], ㉢[]) <input type="checkbox"/> 혼합형 <input type="checkbox"/> 창의·혁신형		
⑧ 전 체 유 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⑨ 주된 사업내용			
⑩ 업종			
⑪ 사업분야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보건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 <input type="checkbox"/> 환경 <input type="checkbox"/> 문화·예술 <input type="checkbox"/> 보육 <input type="checkbox"/> 산림 보전 및 관리 <input type="checkbox"/> 가사 간병 <input type="checkbox"/>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input type="checkbox"/> 고용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제조 <input type="checkbox"/> 유통 <input type="checkbox"/> 기타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2호의2~제2호의6서식) (해당기업만 제출) 4. 유급근로자 명부[별지 제2호의7서식] (해당기업만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보험),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준수여부 확인) 공고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분 제출(해당기업만) 5.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 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6. 정관·규약 등 7.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8.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별지 제2호의8서식] 9.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확인 통합정보시스템 제출 10.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기업개요

기업명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연혁			

◆ 인증요건 충족계획

사회적목적유형 신청	<input type="checkbox"/> 사회서비스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일자리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공헌형(㉠[], ㉡[], ㉢[]) <input type="checkbox"/> 혼합형 <input type="checkbox"/> 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지정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조직형태	현재 조직형태 및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계획(정규직 00명 등)
의사결정구조	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규약관	정관(규약) 제·개정 계획 - 의사결정구조, 종사자 규정 등 필수 기재사항 추가(개정) 계획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1. 사업 목적 (사업의 필요성)	1-1 기업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소설의선) : 사회적 목적 실현 계획(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등) 1-2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회문제(사업필요성)
2. 사업 내용 (영업수입 확보방안)	2-1 구체적 사업내용 2-2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창출 방안 2-3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2-4 핵심고객 및 판로 확보 방안 2-5 가격경쟁력 및 시장분석 등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3. 사업 역량	<p>3-1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p> <p>3-2 대표자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 관련사업 수행 경험이나 학력 및 자격사항</p> <p>3-3 사업 수행 관련 자원 확보 : 사업장 확보여부 및 확보계획 : 지역 자원 연계 방안 등</p>
4. 사업 목표	<p>4-1 연차별 매출규모</p> <p>4-2 고용창출 계획</p> <p>4-3 수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계획</p> <p>4-4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른 정량적 실현 목표</p>

◆ 지정이후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1년차	<p>(예시)</p> <p>- 사업장(사업시설) 확보 및 인력 확충</p>
2년차	<p>(예시)</p> <p>-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 및 신청</p> <p>- 사업장(지점) 추가 확보</p> <p>- 근로자 추가 고용 계획</p>
3년차	<p>(예시)</p> <p>-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p>

◆ 기타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등을 작성

* 해당기업의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필요시 별지작성)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 (B/A)	
	명		명		%	
취약계층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 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	------------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근로자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사업지역	()시/도 ()시/군/구							
지역 사회 공헌형 ㉓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지역취약계층 근로자(B)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지역취약계층 수혜자(B)		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구분	연번	성명	생년월일		해당 취약계층	
		근 로 자						
		수 혜 자						
	지역자원 연계현황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지역주민의 소득·일자리 증대						
지역 사회 공헌형 ㉔	지역의 사회 문제해결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지역 사회 공헌형 ㉕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지원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 다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 비고

1.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 (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 (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기타(창의·혁신)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과 그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관련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	-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 관련 사업 추진 실적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대표자' 직접 작성
-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지정 취소 및 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환수 될 수 있음

1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시) ·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 매월 임금 정기 지급 · 최근 3개월 이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없음 · 주휴수당(일명 주차수당) 지급 ·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2021년 시간급 8,720원, 월 209시간 기준 1,822,480원) · 기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사항	□예 □아니오
2	'직업안정법' '과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시) · 근로자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였음 · 4대보험 체납 없음 · 최근 3개월 이내 부당해고 하였거나 부당해고로 조사받는 등 위반사항 없음 · 노동청, 노동위원회 등에 법령 위반 등으로 신고·접수 된 사항 없음 · 기타 노동관계법령 준수하고 있음	□예 □아니오
3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시) · 식품위생법령 위반사항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사항 없음 · 법인세법 등 기타 사업관련 현행법령 준수하고 있음	□예 □아니오
4	대표자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6	과거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가 인증(지정) 취소되거나 반납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2019년, 2020년에 3회이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탈락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8	마을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기초지자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지정서 사본 별첨 제출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노동관계법령의 범위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과건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장의 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기관용)				
제공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수혜자 (수혜기관)	성명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사 회 서 비 스 내 용	서비스명			
	제공일시			
	수혜자수			
	수혜대상			
	수혜내용			
	환산금액 (세부내역)			

()는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에서는 사회서비스를 받았음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제공기관 :

대 표 : (인)

수혜기관 :

대 표 : (인)

[붙임]

대표자 이력서

사 진 (3cm*4cm)	기업(기관)명		성 명	
	소재지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E-mail	
학 력 사 항	기 간	학 교 명(전공, 졸업여부 등)		
	~			
	~			
	~			
	~			
	~			
경 력 사 항	기 간	내 용(근무처, 직위 등)		
	~			
	~			
	~			
	~			
	~			
	~			
	~			
	~			
	~			
기 타 사 항	※ 기타 상벌사항이나 특기사항(사회활동 등)이 있으면 간략히 기재			